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 양허표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3.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3. 각 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무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는 물량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바호, 사호, 아호, 하호, 거호, 너호, 더호, 러호, 베호, 서호, 어호, 저호 또는 고호에 기재된 원산지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온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신선,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 살코기

HSK 세번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70,000	276,000	282,000	288,000	294,000	300,0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306,000	312,000	318,000	324,000	330,000	336,00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0	24.0	24.0	0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203.19.1000, 0203.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250	8,745	9,270	9,826	10,415	11,04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15.8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11,703	12,405	13,149	13,93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4.6	13.5	12.4	11.3	0

다. 아래에 포함된 **양파**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03.10.1000, 0712.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904	3,111	3,319	3,526	3,734	3,94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4,149	4,356	4,563	4,771	4,978	5,18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5,393	5,601	5,808	5,80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5	135	135	101	0

라. 아래에 포함된 마늘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148	1,230	1,312	1,394	1,476	1,55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640	1,723	1,805	1,887	1,969	2,05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2,133	2,215	2,297	2,297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0	360	360	270	0

마. 아래에 포함된 고추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0.1000,
0904.20.2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27	886	945	1,004	1,064	1,12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82	1,241	1,300	1,359	1,418	1,47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1,537	1,596	1,655	1,65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0	270	270	203	0

바. 아래에 포함된 콩류(검정녹두, 팥, 녹두)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13.31.9000, 0713.32.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38	298	357	417	476	500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595	582	569	556	543	488
0713.32.9000	412	403	394	385	376	338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및 0713.32.9000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24	547	571	595	619	643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469	449	429	409	313	287
0713.32.9000	325	311	297	283	217	199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666	690	714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713.31.9000	260	233	207	0		
0713.32.9000	180	162	143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사. 아래에 포함된 고구마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0714.2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12	265	318	371	424	44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06	166	239	325	해당 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 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466	488	509	530	해당 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53	234	215	196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열거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아. 아래에 포함된 기타 뿌리 및 괴경류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0714.90.909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30	30	30	30	30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30	30	30	3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53	234	215	196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의 수입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자.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808.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9,000	9,000	9,000	9,000	12,000	12,3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	45	45	45	45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2,731	13,113	13,506	13,911	14,329	14,75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3.8	33.8	33.8	33.8	27	27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미터톤)	15,201	15,657	16,127	16,611	17,109	17,62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	27	27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22	23	24
발동수준(미터톤)	18,151	18,696	19,256	19,834	20,429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사과 총량을 포함한다. 이행 11년차부터 이행 23년차까지 각 이행년도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차. 아래에 포함된 녹차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902.10.0000, 0902.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8.3	8.9	9.5	10.1	10.7	11.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9	12.5	13.0	13.6	14.2	14.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15.4	16.0	16.6	16.6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13.6	513.6	513.6	385	0

카. 아래에 포함된 생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910.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573	614	655	696	737	77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819	860	901	942	983	1,0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1,065	1,106	1,147	1,147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7.3	377.3	377.3	283	0

타. 아래에 포함된 맥아 및 맥주맥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3.00.1000, 1107.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02	491	480	469	458	412
1107.10.0000	263	258	252	246	240	21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0,135	10,338	10,545	10,756	10,971	11,19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396	379	362	345	265	242
1107.10.0000	207	199	190	181	139	12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1,414	11,642	11,8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220	197	174	0
1107.10.0000	115	103	91.5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17항을 참조할 것.

파. 아래에 포함된 보리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3.00.9010, 1003.00.902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9010	317	310	303	296	289	260
1003.00.9020	293	287	281	274	268	241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2,815	2,872	2,929	2,988	3,047	3,10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9010	250	239	229	218	167	153
1003.00.9020	231	221	212	202	155	141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3,171	3,234	3,299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9010	139	124	110	0
1003.00.9020	128	115	102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16항을 참조할 것.

하. 아래에 포함된 팝콘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005.90.2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112	6,390	7,668	8,946	10,224	10,73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556	3,994	5,751	7,828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01	572	544	515	486	36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1,246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21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거. 아래에 포함된 옥수수(기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5.9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393,849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93,774	146,521	210,990	287,181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13	298	283	268	253	190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412,603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67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너. 아래에 포함된 매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8.10.0000, 1008.9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50	313	375	438	500	525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25	195	281	383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251	245	240	234	229	206
1008.90.0000	783	766	749	732	715	643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및 1008.90.0000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50	575	600	625	650	675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198	189	181	172	132	121
1008.90.0000	617	591	565	539	413	378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700	725	750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8.10.0000	110	98.3	87.1	0		
1008.90.0000	343	307	272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더. 아래에 포함된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2.90.9000, 1103.20.9000, 1104.19.9000,
1104.29.1000, 1104.2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28	136	145	154	163	173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64.0	85.0	108	134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84	196	208	221	235	249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17	591	565	539	413	378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65	282	299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43	307	272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러. 아래에 포함된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5.10.0000, 1105.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5,000	5,150	5,305	5,464	5,628	5,79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94	285	275	265	255	215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미터톤)	5,970	6,149	6,334	6,52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00	185	170	155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의 수입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머. 아래에 포함된 옥수수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2.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1	216	212	207	202	182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941	12,299	12,668	13,048	13,439	13,84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74	167	160	152	117	10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4,258	14,685	15,126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96.7	86.8	76.8	0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18항을 참조할 것.

버. 아래에 포함된 감자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3.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39	299	359	418	478	502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 (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526	550	574	598	621	645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51	336	321	306	235	215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669	693	717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95	175	155	0

서. 아래에 포함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108.14.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433	541	650	758	866	909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953	996	1,039	1,083	1,126	1,169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51	336	321	306	235	215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212	1,256	1,299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95	175	155	0

어. 이 양허표에 기재된 고구마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108.19.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202	253	303	354	404	424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6	231	226	221	215	194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444	465	485	505	525	545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86	178	170	162	124	114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566	586	606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3	92.6	82.0	0

저. 아래에 포함된 기타 전분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세번 1108.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53.0	66.3	79.5	92.8	106	111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0.5	1.0	1.5	2.0	2.5	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17	122	127	133	138	143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3.5	4.0	4.5	5.0	5.5	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17	591	565	539	413	378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미터톤)	148	154	159	해당없음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미터톤)	6.5	7.0	7.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43	307	272	0

처. 아래에 포함된 낙화생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202.10.0000, 1202.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40	150	160	170	180	19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200	211	221	231	241	25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261	271	281	281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30.5	230.5	230.5	173	0

커. 아래에 포함된 참깨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207.4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3,561	3,815	4,070	4,324	4,578	4,83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5,087	5,341	5,595	5,850	6,104	6,35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6,612	6,867	7,121	7,121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473	0

터. 아래에 포함된 인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그룹1: 1211.20.1100, 1211.20.1210, 1211.20.1220, 1211.20.1240

그룹2: 1211.20.1310, 1211.20.1320, 1211.20.1330

그룹3: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미터톤)	62	64.4	66.8	69.2	71.6	74.1	76.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	--	--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미터톤)	78.9	81.3	83.7	86.1	88.5	90.9	93.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	--	--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15	16	17	18	19-20	21
발동수준(미터톤)	95.8	98.2	101	103	10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	--	--

그룹1 222.8 173 170 167 167 0

그룹2 754.3 587 576 566 566 0

그룹3 754.3 566 566 566 0 0

퍼. 아래에 포함된 참기름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515.5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30.0	32.2	34.4	36.6	38.9	41.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43.3	45.5	47.7	49.9	52.1	54.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미터톤)	56.6	58.8	61.0	61.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630	630	630	473	0

허. 아래에 포함된 설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701.91.0000, 1701.99.0000

이행년도	1	2	3	4	5
발동수준(미터톤)	833	858	884	910	93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50	50	50	50

이행년도	6	7	8	9	10
발동수준(미터톤)	966	995	1,025	1,055	1,08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50	50	50	50

이행년도	11	12	13	14	15
발동수준(미터톤)	1,120	1,153	1,188	1,223	1,26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	50	50	50	50

이행년도	16	17	18	19	20
발동수준(미터톤)	1,298	1,337	1,377	1,418	1,46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7.5	37.5	37.5	37.5

이행년도	21
발동수준(미터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고. 아래에 포함된 주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2207.10.901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236	295	354	413	472	496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118	184	266	361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64	258	253	247	241	217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519	543	566	590	614	637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08	199	191	182	139	127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미터톤)	661	684	708	해당없음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16	104	91.8	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들어온다.

노. 아래에 포함된 텍스트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3505.10.4000, 3505.10.5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미터톤)	14,000	14,420	14,853	15,298	15,757	16,23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65	355	345	334	291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미터톤)	16,717	17,218	17,735	18,267	18,815	19,37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5	260	244	228	152	131

이행년도	13
발동수준(미터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부록 2-나-1 제24항을 참조할 것.